# 시보

선	기관의 장
람	

# all ways INCHEON

### 제2193호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2023년 11월 30일 목요일

<u>조례</u>	
○ 인천광역시조례 제716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	2
○ 인천광역시조례 제7167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	13
○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304호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	16
○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305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 고시	18
공 고	
<u> </u>	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25호 2023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	당고 · 20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29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	22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30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	23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34호「전기공사업법」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	고… 24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47호 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	26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49호 인천도시관리계획【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】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	주민 28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6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
○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72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(2024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	
	,

회				
람				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공보담당관실

#### 조 례

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1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유정복

인천광역시조례 제7166호

####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다만, 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, "글로벌도시국장 및 대변인"을 "대변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사항과"를 "사항, 주요 시정현안의 점검·조정에 관한 사항,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문화체육관광국장,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국장"을 "글로벌도시국, 도시계획국, 도시균형국 및 글로벌비즈 니스협력단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경제자유구역청,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

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시민안전본부, 환경국, 교통국, 경제산업본부, 미래산업국, 해양항공국, 도시계획국, 도시균형국, 글로벌도시국"을 "시민안전본부, 경제산업본부, 미래산업국, 환경국, 교통국, 해양항공국"으로, "여성가족국"을 "여성가족국, 글로벌도시국, 도시계획국, 도시균형국,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"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"심사분석"을 "심사분석, 혁신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평생교육"을 "평생교육, 대학협력"으로 한다.

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2조, 제13조, 제10조, 제11조, 제19조, 제20조,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.

제17조(종전의 제20조)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8조(종전의 제17조)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·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(종전의 제15조)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.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
  - 8.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제20조(종전의 제16조)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)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

분장한다.

- 1.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- 2.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
- 3.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기업 및 내・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
- 5.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
제21조제3호 중 "도시브랜드 정책"을 "뉴미디어 홍보"로 한다.

제71조제6호 중 "지도·단속"을 "지도·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"로 한다.

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"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"을 "자율신설기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"를 "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"로 하고, 제2조 각 호 외의부분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각각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하며,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균형발전정무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8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6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0조의2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3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③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2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①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(b)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(b)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①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®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각각 "행정부시 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4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7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②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3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6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2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5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③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2조제2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③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0조제3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각각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③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- ②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행정부시장"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"으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글로벌도시국장"을 "도시계획국장"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캠프마켓(부평미군기지)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

- ③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
- ④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행정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 ④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문화복지정무부시장"을 "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"으로 한다.

#### ◇개정이유

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·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◇주요내용

- 가.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,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.(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나.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·국·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, 실·국·본부의 직제순서 를 변경함.(제5조제1항)
- 다.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,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.(제6조제1호 및 제4호)
- 라.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.(제17조부터 제20조까지)
  - 스마트도시 추진 사무: 글로벌도시국→도시계획국
  -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: 글로벌도시국→도시계획국
  -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·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무: 도시균형국→글로벌도시국
  -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: 여성가족국→글로벌비즈니스 협력단
  - 기업 및 내·외국인 투자유치 사무: 글로벌도시국→글로벌비즈 니스협력단
-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: 글로벌도시국→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마.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하고, 일부 사무를 신설함.(제20조의2 신설)
  - (신설)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무
  - (신설)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

- 바. 대변인의 일부 사무를 조정함.(제21조제3호)
- 사. 수산기술센터의 소관 사무 중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제71조제6호)
- 아.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5년 2월 5일까지로 변경하여 자율신설기구(재정기획관,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)의 존속기한을 통일함.

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1월 30일

인천광역시장 유정복

인천광역시조례 제7167호

####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3,983명"을 "3,98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24명"을 "22명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3]

#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541						
정무직 계	3						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 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89						
1급	1				1		
2급	1				1		
2:3급	3	2	1				
3급	22	14		1	4	3	
3·4급	2	2					
4급	161	99	4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93		1				
전문경력관 소계	6						
별정직 계	17						
1급 상당	1	1					
2급 상당							
3급 상당							
4급 상당	7	1	6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9						
연구직 계	198						
연구관	33			25		8	
연구사 소계	165						
지도직 계	29						
지도관	5			5			
지도사 소계	24						
소방직 계	3,405						
소방정	21	8		13			
소방령 이하 소계	3,384						

#### ◇개정이유

민선8기 비전과 핵심 공약·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◇주요내용

한시기구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(제2조 및 별표3)

○ 총 정원 : 7,541명 → 7,541명(증감 0)

#### <기관별 정원>

- 집행기관의 정원 : 3,983명 → 3,985명(2명 증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3,405명 → 3,405명(증감 0)
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29명 → 129명(증감 0)
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24명 → 22명(2명 감)

#### <직급별 정원>

- 일반직 정원 : 3,889명 → 3,889명(증감 0)
  - · 일반직 3급 정원 : 21명 → 22명(1명 증)
  - 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694명 → 3,693명(1명 감)

#### 고 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304호

##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

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8일

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# 1. 지정취지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'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'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.

2.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(기존 구역 확대)

ਨੀਮੀ	연번 지자체	지역(	비고	
선턴 /		전	亭	1 H 1/2
1	동구	화수·화평동 일원(0.38km²)	화수·화평동 및 송림·송현동 일원(1.1k㎡)	기존 구역 확대 (0.38km³→1.1km)

- 3. 지정일자(고시일자) : 2023년 11월 28일
- 4.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(☎032-440-3523) 또는 동구청 환경위생과(☎032-770-652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도 1부.

# [붙임]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도

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305호

#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 고시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청사시설과(☎440-2656), 교통안전과(☎440-3925),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453-2955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3. 11. 30.

# 인천광역시장

#### 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○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

####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
- 명 칭: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

## 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- 면 적: 7,756.4㎡
- 규 모: 인천광역시청 공공청사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(지하3층/지상1층, 69,091.10㎡)

## 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 명: 인천광역시장
- 주 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(구월동)

5.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○ 착공예정일: 실시계획고시일

○ 준공예정일: 2025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연번 위	위치	지번	지목	면적	(m²)	소유지	<b>!</b>	미
	뀌시	시킨	기숙	공부	편입	성명	구분	미끄
1	남동구 구월동 1138		대	69,091.1	7,756.4	인천광역시		
합계	총	계		69,091.1	7,756.4			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 없음

#### 공 고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25호

# 2023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

「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'2023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'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인천광역시장

- 1. 심의일시 : 2023. 11. 23.(목) 14:00
- 2. 심의장소 :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
- 3. 심의작품 : 총 9작품
- 4. 심의결과 : 가결 7작품(원안 5, 조건부 2), 부결 2작품
- 5. 작품별 심의결과 : 첨부
- 6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기반과(☎ 032-458-72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〈첨부 : 작품별 심의 결과〉

# □ 9작품 중 가결 7작품(원안 5, 조건부 2), 부결 2작품

연	번	서키자사		자 표 d	이미지	심의	결과	шП
건물	작품	설치장소	종류	작 품 명	MIN	가결	부결	비고
1	1	운남동 1710-2	조각	Natural flow			0	
'	2	700 IVIO Z	조각	Love for you			0	
2	3	서구 불로동 검단지구 AA23BL	조각	Sweet Love is Superior 달콤한 사랑이 최고		0		조건부
3	4	부평구 부평동 179-1 외	회화	빛과 갯벌		0		
	5	2필지	회화	염원		0		
4	6	미추홀구 학익2동 290-1번지 일대	조각	행복을 꿈꾸는 가족		0		
5	7	미추홀구 학익1동	조각	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25-01	J O Th	0		
5	8	역식1공 220번지 일대	조각	By the Wind		0		조건부
6	9	중구 유동 5-5	조각	나의 봄	4 A ×	0	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29호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##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

□ 변경등록사항 : 기술인력 변경

사업장명	비교기	등록일자 :	변경사항				
(분야 및 등록번호)	대표자	등록일자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	
(주)삼공이앤피 (대기환경전문공사업, 제59호)		2009.7.20.		강경문 (대기환경기사) [기술사 대체	좌동		
	조홍엽		기술	배헌수 (일반기계기사)	좌동		
			인력 변경	한형수 (고급 전기기술자)	좌동		
				허성규 (대기환경기사)	이보은 (대기환경기사)	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30호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」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####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

□ 변경등록사항 : 기술인력 변경

사업장명	मो च चो	등록일자	변경사항				
(분야 및 등록번호)	대표자	· 중국 될 사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	
(주)사베코 (대기환경전문공사업, 제161호)				이창주 (대기환경기사) [기술사 대체]	좌동		
	이창주	2005.2.25.	기술인력	박혜영 (대기환경기사)	좌동		
			변경	박용희 (산업위생관리기사)	이하정 (산업위생관리기사)		
				임승빈 (화공기사)	박찬훈 (화공기사)		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34호

# 「전기공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전기공사업법」제9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사전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(등기)송달이 불가능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# 인 천 광 역 시 장

○ 공고제목 : 「전기공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○ 공고기간 : 2023. 11. 30. ~ 2023. 12. 14.(15일간)

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예정된	처분의 제목	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
0 [2]	성명(명칭)	연성전기전력 주식회사[인천-01*9*] 대표 나*민
2. 당사자	주 소	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**, 제1층 디동 10*호(갈산동)
3. 처분의 사	원인이 되는 실	전기공사업 등록사항변경 지연신고 - 변경일(입사): 2023. 4. 10 신고일(입사): 2023. 10. 17.(160일 지연) - 변경일(퇴사): 2023. 8. 1 신고일(퇴사): 2023. 10. 17.(47일 지연)

4.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	과태료 100만원 ※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% 감경된 금액 납부가능									
5. 법 적 근 거 및 조문내용	· ·	위반 : 「전기공사업법」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처분 : 「전기공사업법」제4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								
	제	기관명	인천광역 시청	부서명	에너지 산업과	담당자	양창선			
6. 의견제출	· 출 청	주 소	인천광역시 809(구월동			전화번호	440-4359			
		전자우편	yang000111@korea.kr							
	제	출기한	2023년	12월 2	6일(화) 7	<b>가</b> 지				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(전기전력팀) 으로 문의(양창선 ☎ 032-440-4359) 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47호

# 2024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

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, 2024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(2019년 발행분)의 상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30.

# 인 천 광 역 시 장

1. 상환대상 : 2019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

2. **상환총액** : 금136,027,250,000원(금일천삼백육십억이천칠백이십오만원)

3. 상환조건 : <u>원리금 일시상환 / 2019. 1~8월 연 1.25% 복리,</u> 2019. 9~12월 1.05%복리로 5년거치 이자 지급

4. 상 환 일 : 채권 발행(매입)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(月)의 말일(末日)부터 상환 가능

※ 예시 : 2019년 1월 7일에 채권 매입 → 2024년 1월 31일부터 상환 가능
 단,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

#### 5. 상환장소

- 신한은행 발행분 : 전국 신한은행 지점(신한SOL앱에서 신청가능(개인))
- 농협은행 발행분 : 전국 **농협은행 지점**(홈페이지 신청 가능(개인))
- 6. 상환 청구시 지참물
  - 개인(본인) : 채권매입증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, 도장
    - \*\* 대리인(가족포함) : 채권매입증서, 위임인 신분증 사본, 위임인 인감증명서,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
- 법인 : 채권매입증서,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임장, 법인 인감도장(사용인감계 가능), 대리인 신분증
- ※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→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시면 신분확 인 후 상환(단,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음)

#### 7.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

- 원금 : 상환개시일(매입후 5년 경과)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
- 이자 : 상환개시일(매입후 5년 경과)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
- ※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채권 상환이 불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\* [예시] 2019. 1. 7. 채권 매입의 경우
- ◇ 2024. 1. 31.부터 원리금(원금+이자) 모두 상환 가능(상환개시일 도래) → 2029. 1. 31.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(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)
- ◇ 2029. 2. 1.부터 원금만 상환(이자 미지급) (상환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→ 이자 소멸시효 적용 → 이자 지급 불가) → 2033. 1. 31.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
- ◇ 2034. 2. 1.부터는 원금 상환 불가(원리금 일체 미지급) (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→ 원금 소멸시효 적용 → 원금 지급 불가)

#### 8. 기타사항

- 2009년~2018년에 발행된 채권도 2024년 내에 상기 지정은행에 청구 하시면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- 단, 2009~2014년도 발행 채권은 원금만 지급 가능하며
  - 2009년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2024년도 해당월말(발행일로부터 만15년이 되는 월의 말일)까지만 원금 지급이 가능하며, 이후로는 원금 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원리금 일체의 지급이 불가합니다.

#### 9. 문 의 처

-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리스크관리팀 : ☎ 032-440-1674
-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: ☎ 032-423-0079
-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: ☎ 032-430-4864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49호

# 인천도시관리계획【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】 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중앙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입안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8.

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# 1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(변경)결정(안) 총괄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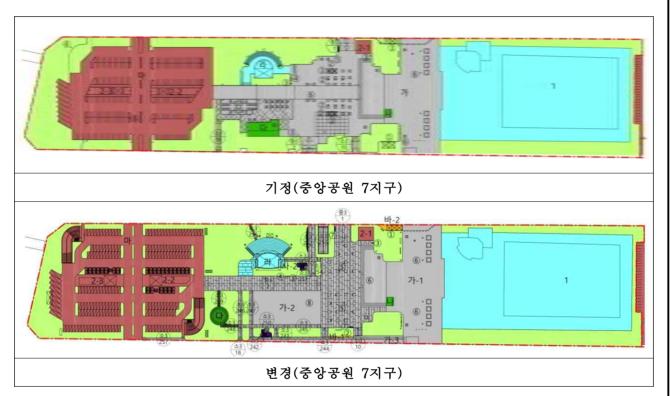
가. 총괄표(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, 구월동/ 미추홀구 관교동,문학동 일원)

			В	경전					В	경호			用卫
구 분	부지면적	시설면걱		건축물		공작물	부지면적	시설면걱		건축물		공작물	※부지 면걱증감
	(m²)	(m²)	동수(동)	바닥면적(㎡)	연면격(㎡)	(7])	(m <sub>5</sub> )	(m <sub>5</sub> )	동수(동)	바닥면적(㎡)	연면적(㎡)	(71)	내용
계	352,723.4	127,668.2	12동	24,249.22	44,298.42	1,1307]	352,723.4	129,427.8	12동	24,478.72	44,527.92	1,1477	
1지구	37,735.3	7,515.2	1동	112.0	112.0	1527]	37,735.3	7,515.2	1동	112.0	112.0	1527]	
2지구	46,832.0	15,850.6	1동	133.12	133.12	99.7]	46,832.0	15,850.6	1동	133.12	133.12	997]	
3지구	40,401.4	10,439.3	1동	103.0	103.0	1557	40,401.4	10,439.3	1동	103.0	103.0	1557	
4지구	43,023.0	11,716.2	1동	177.3	129.6	1867]	43,023.0	11,716.2	1동	177.3	129.6	1867]	
5지구	37,482.0	8,447.9	1동	102.5	97.7	1227]	37,482.0	8,447.9	1동	102.5	97.7	1227	
6지구	17,783.7	9,297.6	-	-	-	66.7]	17,783.7	9,297.6	ı	-	-	667]	
7지구	50,750.4	35,023.0	4동	23,221.3	43,323.0	70.7]	50,750.4	36,782.6	4동	23,450.8	43,552.5	877]	
8지구	52,233.8	22,452.4	2동	395	395	1597	52,233.8	22,452.4	2동	395	395	1597	
9지구	26,481.8	6,926.0	1동	5.0	5.0	1217	26,481.8	6,926.0	1동	5.0	5.0	1217	
. 7]	정 : 시설율	: 36.19%	· 녹지율 :	63. <u>81% · 건</u> 대	創盤 : 6.87%	·	- 3	<u> 변경</u> : 시설	율 : 36. <u>69%</u>	<u> </u>	3.31% · 건	폐율 : 6.94	1%

#### 2.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

○ 중앙공원 7지구 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정에 따라 대상지 상부 공원 재조성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하여 기존 노후된 시설을 개선 및 동선을 변경함으로써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## 3.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조서 및 조성계획도: 부분 발췌



※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

#### 4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○ 열람기간 : 2023.12.01. ~ 2023.12.15. (15일간)

○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

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(☎032-440-5878)
-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(☎032-453-6293)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68호

#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
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9일

# 인 천 광 역 시 장

## ○ 행정처분 사항

등록번호	상 호 (대표자)	영업소재지	위반내용	<b>처분내용</b> [처분일자]
320012	(주)가우자리 (김형태)	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41, 주안빌딩 2층 (주안동)	등록기준 미달 (기술능력)	영업정지 15일 ('23.11.29.~12.13.) [2023.11.28.]

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2672호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(2024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)

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내 채권상환 소멸시효 경과 예정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(2009년 및 2014년 발행분)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30.

# 인 천 광 역 시 장

- 1. **내상자** : 2009년 및 2014년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않은 매입자(법인 또는 개인)
  - 2009년 발행분 : 2024년까지 원금만 상환(이자는 미지급)
  - 2014년 발행분 : 2024년까지 원리금(원금+이자) 모두 상환
  - ※ 2024년 중에도 각 채권의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(末日)에 소멸시효 경과되어 상환 불가 예정이므로, 매입자가 반드시 매입일을 인지(확인)하여 그 이전에 청구하여야 상환 가능
    - ----《 소멸시효 경과 시점 이후에는 채권 상환이 불가합니다 》---
  - **원 금** : **상환기일**(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, 말일)에서 기산하여 **10년간 지급 가능**
  - **이 자** : **상환기일**(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, 말일)에서 기산하여 **5년간 지급 가능**
  - ※ 예시 1) 2009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
    - ▷ **2014년 1월 31일부터 <u>2019년 1월 31일까지</u> 원리금(원금 + 이자)** 상환 가능(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)
    - ▷ **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**(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)
    - ▷ **2024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**(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)

#### ※ 예시 2) 2014년 1월 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

- ▷ **2019년 1월 31일부터 <u>2024년 1월 31일까지</u> 원리금(원금 + 이자)** 상환 가능(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)
- ▷ **2024년 2월 1일부터 <u>2029년 1월 31일까지</u> 원금만 상환**(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)
- ▷ **2029년 2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**(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)

## 2. 상환장소

- 신한은행 발행분 : 전국 신한은행 지점(신한SOL앱에서 신청가능(개인만))
- 농협은행 발행분 : **전국 농협은행 지점**(홈페이지 신청 가능(개인만))

### 3. 청구시 구비서류

- 본인청구 : 채권매입증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 도장
- 대리인(가족포함) : 채권매입증서, 위임인 신분증 사본, 위임인 인감증명서, 위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- ※ 매입증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도 상환 가능 → 신분증 및 도장만 지참하시면 신분확인 후 상환(단, 증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 부담 있음)

#### 4. 기타 참고사항

○ 이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도 2024년에 상환을 실시하며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환 가능하오니, 신속히 해당 은행을 방문·청구하시어 원리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5. 문 의 처

○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: ☎ 032-440-1674

○ 신한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: ☎ 032-423-0079

○ 농협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 : ☎ 032-430-4864